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8권 제2호(통권 제110호, 2017 · 여름)

엄벌주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연구의 동향과 쟁점

추 지 현*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는 엄벌주의에 대한 개입과 비판의 지점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를 강화 혹은 제어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엄벌주의의 역사적, 사회적 보편성을 강조하는데 흔히 차용되고 있는 형벌포퓰리즘, 신자유주의 형벌국가에 대한 논의에 한정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연구들의 동향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들은 제도 정치의 구조, 언론 및 시민사회의 역량, 형사사법체계의 특성과 이에 대한 신뢰 수준, 해당 사회의 법 문화나 포용성 등이 엄벌주의에 변이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엄벌주의로 귀결되지 않는 참여정치의 확대로서 '두터운' 형벌 포퓰리즘 역시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을 토대로 한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특수성을 고려한 실증적인 연구가 개진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 엄벌주의, 형벌 포퓰리즘, 모럴패닉, 신자유주의 형벌국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Ⅰ. 서론

2000년대 중반 이후 성폭력, 아동학대 및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들의 제·개정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고, 2010년에는 1953년 제정된 이래 단 한 번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던 형법상의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되기에 이른다. 이 시기를 경유하면서 ‘흉악’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의 얼굴공개는 더 이상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공고화 되었으며, CCTV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빅브라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호소력을 잃고 있다. 자의적 국가권력으로부터 피의자 등의 자유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 보다는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는 법 집행을 통해 피해자의 응보 감정을 실천하고 잠재적 피해의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추지현, 2014; 김광수, 2015).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 사회에서도 엄벌주의적 전환(punitive turn)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평가되고 있다(김일수, 2010; 이덕인, 2011; 최정학, 2014). 엄벌주의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와 재사회화를 도모하려는 교정 복지의 관점보다 범죄나 일탈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불관용, 가혹한 형벌 부과와 범죄자에 대한 무력화를 지향하는 담론과 실천을 지칭하는 개념이다(Torny, 2010; Caplow & Simon, 1999; Garland, 2002). 범죄예방에의 효과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와 같이 강력한 처벌이 지지되고 있는 형국에 대하여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에서는 범죄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생산하는 미디어의 편향된 보도 관행, 허구적이고 과장된 범죄/자 및 피해자 담론을(박형민·이민아, 2009; 양정혜, 2010),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기반해 안전과 질서를 명분으로 처벌 강화 전략을 구사하려는 보수적 정치인들의 비전문성을 문제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김일수, 2010; 이경재, 2010; 이덕인, 2011).

특히 형벌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과정을 설명하는 논자들은 위와 같은 조건 속에서 엄벌주의는 상존할 수 있는 것, 역사적으로 편재(遍在)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김일수, 2010; 정재준, 2010). 이들은 형벌 포퓰리즘을 권위주의 정부나 보수적 정치 세력이 주도하는 대대적인 치안 기획으로 바라보는데, 때문에 2012년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 기획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삼청교육대 운영이나 1990년대 초반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과 동일선상에 놓이기도 한다(김일수, 2010; 정재준, 2010). 하지만 엄벌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몰역사적 접근은 당시의 역사적 유제가 오늘날에 미친 영향은 물론, 오늘날의 그것이 갖는 특징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이와 달리 오늘날의 엄벌주의를 보다 거시적인 사회 변동, 즉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대와 사회적 연대의 소멸이라는 후기 근대사회의 보편성이 초래한 결과로 설명하는 논자들의 다수는 그 효과를 '신자유주의 형벌국가'의 대두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위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강화된 일상적 불안이 결국 위험 집단으로 간주되는 언더클래스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방식의 형사정책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조연민, 2014; 이호중, 2013).

엄벌주의의 역사적 혹은 사회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논의들은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한국의 엄벌주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한 관점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과연 이와 같은 설명들이 오늘날의 엄벌주의 작동 방식과 효과를 평가하는데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오늘날의 엄벌주의는 권위주의 시기의 그것과 정말 동일한가? '대중'은 과연 미디어와 정치적 행위자들이 생산한 담론을 일방적으로 담지하는 수동적 주체에 불과한 것인가? 그들의 '법 감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성폭력, 아동폭력,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고 언더클래스에 대한 배제를 강화시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가?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문제라면 피해자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실증적 해명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으며, 이 자리를 엄벌주의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는 서구의 이론들과 그로부터 도출된 선험적 평가들이 대체하고 있다.

본 논문은 엄벌주의 현상의 보편성 혹은 불가역성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개입과 비판의 지점을 구체화하기 힘들다는 점, 그 원인과 효과를 규명하는데 있어 다양한 사회적 변이와 조건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현실에 기반한 실증적인 연구를 제안하며, 이를 위한 예비적 작업으로서 엄벌주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흔히 차용되고 있는 위의 두 이론, 형벌 포퓰리즘과

신자유주의 형벌국가에 대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발전시키고 있는 실증 연구들의 흐름과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엄벌주의의 제도화 과정으로서 형벌 포퓰리즘

1. 형벌 포퓰리즘의 보편성 논의

가. 역사적 보편성으로서 권위주의적 엄벌주의

1980년대 이래 서구사회에서는 대대적인 체포와 형량 강화로 구금율[1]의 급증을 경험하고 있던 미국의 사례가 더 이상 '미국 예외주의'(Tonry, 2007; Downes, 2001)가 아니라는 진단과 함께 엄벌주의를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코헨은 성매매, 마약 사용 등 지배적인 도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의 집단적 반응으로서,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원한 등의 감정을 '모럴패닉(moral panic)'으로 지칭하며 그것이 엄벌주의로 이행되는 매커니즘을 설명했다.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 '사회악(folk devil)'으로 간주되기 시작하고, 언론은 이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통해 모럴패닉을 추동하게 되며, 정책 입안가들이나 형사사법기관은 이러한 감정을 고조시켜 사회 정의를 명분으로 한 엄벌주의 정책을 도입, 실행하게 된다는 것이다(Cohen, 1972). 이후 모럴패닉에 대한 관심은 범죄/자와 피해/자의 표상에 집중하는 문화 연구(Ungar, 2001; McRobbie & Thornton, 1995), 그것이 정치적 행위자들을 통해 제도화 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로 분화, 발전되기 시작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형벌 포퓰리즘 개념을 원용하는 일군의 연구들로 전개된다(Beckett & Sasson, 2000; Pratt, 2007; Simon, 2007).

통상 '형벌 포퓰리즘(penal populism)'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당성 확보를 위

---

1) 인구 10만명당 구금시설의 수용 인구로서 통상 일 평균 혹은 연평균 입소인원으로 측정되고 있다. 구금율의 상승은 교도소 입소 인구의 증가 혹은 형기의 장기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엄벌주의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Torny, 2010).

해 미디어와 대중 담론에 편승하여 범죄와 처벌을 선거 공약이나 정치적 이슈로 만드는 부정적 경향'(Pratt, 2007), '범죄감소나 사법적 정의의 실천보다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고안된 형벌 정책들의 집합'(Robert et al., 2003) 등 주로 제도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비전문성과 의도성을 강조하며 드러내는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리고 초기의 연구들은 모럴패닉 담론이 안전과 질서를 강조하는 보수적 정치인들에게 더욱 친화적이고, 때문에 엄벌주의는 통상 이들이 구사하는 형벌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데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벡켓과 사순은 1970년대 미국 사회에서의 범죄 담론이 유색 인종과 뉴딜정책에 대한 공화당의 불만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고 이들을 통해 추동된 형벌 포퓰리즘이 엄벌주의를 관철시키는데 성공적인 전략이 된 것은 물론 유리한 정치적 도구로 작동했다고 주장한다(Beckett & Sasson, 2000). 그 밖에도 영국의 보수당 집권기 엄벌주의 형사정책들의 등장과 관련 예산 지출의 증대 과정에 대한 연구(Brake & Hale, 1992), 미국의 집권 정당의 성격, 혹은 의회의 공화당원 비율과 형사정책 예산 변화에 대한 역사적 연구들 역시 집권 정당의 보수적 성향과 엄벌주의간의 친화성을 강조한다(Young, 1995; Lafree & Tseloni, 2006).

하지만 형벌 포퓰리즘에 대한 대표적 연구자인 플랫은 위와 같이 엄벌주의의 제도화 과정에 있어 보수 정치인으로부터 추동된 '위로부터'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는 냉전기 권위주의 정부가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동원한 처벌 강화책이나 대중 일반의 의사를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을 '형벌 포퓰리즘'과 구별하면서, 후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안전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가져온 결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즉, 오늘날의 형벌 포퓰리즘은 지극히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외양"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Pratt, 2007).

나. 후기근대사회의 보편성으로서 형벌 포퓰리즘

플랫과 같이 오늘날의 엄벌주의가 대중 일반의 요구를 통해 추동된 것이라는 주장은 모럴패닉이 과거와 달리 잠재적/피해에 대한 위험 인식과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연구들을 통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예컨대 융거는 1970년대의 모럴패닉은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 성매매나 소년들의 일탈, 마약

사용 등을 중심으로 생산된 바, 그와 같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모럴패닉의 주된 요소로 보는 관점은 오늘날의 범죄 통제 방식을 설명하는데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그것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강조하는 후기 근대사회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과거와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Ungar, 2001). 갤런드 역시 마찬가지의 논지로 결혼과 가족 제도의 붕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의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비관과 경제적 불확실성 등 후기 근대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 오늘날의 사회 통제가 위치해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이 인구 집단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담론을 확산시켰고 범죄 피해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가혹한 처벌을 지지하는 '통제의 문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2](Garland, 2002).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형벌 포퓰리즘의 핵심적인 자원으로 지적되는 것이 '피해자'라는 정체성이다(Garland, 2008; Pratt, 2007). 갤런드는 피해에 대한 호소는 잠재적 피해자의 입장에서 처벌 강화와 안전망 확대를 지지하는 대중 일반의 욕구를 생산하게 되고, 특히 순결함과 취약함을 전형으로 하는 이상적인 피해자 담론이 이것을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그 결과 이에 부합하는 아동 성폭력이 쉽게 엄벌주의의 중심에 놓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대중 일반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자에 대한 동일시, 즉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엄벌주의를 관철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의 정당성은 과거의 국가-범죄자의 2자 관계에서 국가-피해자-범죄자라는 3자 관계의 문제로 변화했음을 지적한다(Garland, 2008)[3].

2) 비공식적 통제의 약화가 처벌 강화를 지지하는 태도를 가져왔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은 아닌데, 가치의 측면을 철저히 배제하는 '순수 법사회학'을 추구했던 블랙 역시 법적 통제는 여타의 사회통제와 반비례하며 변화한다는 가설을 주장한 바 있다(Black, 1976).

3) 이것이 곧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이해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스트링거는 피해자의 행위성을 부정하는 것을 피해자다움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피해자의 이미지는 오히려 그 전형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남성중심적 성폭력 담론을 강화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Stringer, 2014).

2.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형벌포퓰리즘과 엄벌주의의 변이

가. 형벌 포퓰리즘의 정치적 함의

오늘날의 엄벌주의가 그 역사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논의들과 달리 ‘피해’와 아래로부터의 요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정치적 정당성은 충분한 것인가?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대다수의 형벌 포퓰리즘의 연구들은 위와 같이 잠재적/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서는 아래로부터의 요구,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외양에 비판적 입장이 지배적이다. 짐링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삼진아웃법이 도입 되던 당시의 형벌 포퓰리즘이 새로운 법규가 만들어지는 민주적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였을 뿐,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었던 피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을 약화시켜 버린 것을 문제로 지적한다(Zimring, 1996). 로버트 역시 같은 이유로 미국 사회에서의 형벌 포퓰리즘이 의회와 행정부, 사법부의 전통적인 ‘권력 분립’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한다. 대중들의 공분을 형벌에 반영하기 위해 합리적 토론이나 과학적 분석의 결과들이 삭제되는 과정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는 것이다(Robert et al., 2003).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형사 입법 과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비판은 온당한 것으로 보인다(한인섭, 2010; 김광수, 2015).

그렇다면 피해나 대중 담론은 필연적으로 엄벌주의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들의 인권 보장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모든 형벌 포퓰리즘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확장과 무관한 것인가? 코헨은 자신의 초기 논의를 수정하여 모든 모럴패닉을 엄벌주의와 친화적인 것,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모럴패닉이 그간 주변화 되어 왔던 이슈, 예컨대 국가 폭력이나 기업 범죄, 젠더 폭력,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Cohen, 2004). 보텀 역시 플랫을 비롯한 대다수의 형벌 포퓰리즘 연구자들이 충분한 경험적 증거 없이 대중의 범죄에 대한 태도를 강력히 처벌친화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재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며 형벌 포퓰리즘이 범죄와 처벌에 대한 정치적 논쟁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형사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대중 전략이 반드시 엄벌주의를

지향하거나 사법적 정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형벌 포퓰리즘이 엄벌주의와 결합하는 현상을 '포퓰리즘적 엄벌주의(populistic puntivness)'로 명명한다(Bottom, 1995).

이러한 평가는 형벌 포퓰리즘에 대한 상이한 개념 정의의 문제와도 연동된다. 앞서 로버트와 플랫은 그것을 대중 담론에의 '편승', 사법적 정의의 무시 등 부정적 '효과'를 포괄하여 정의하였지만, 보텀이나 뒤주르는 그것을 형사정책이 도입, 실행되는 정치적 '과정'으로서 보다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한편 시민의 사법참여는 사법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민주적 가치의 실현으로서 사법참여와 대중담론에 '편승'한 형벌 포퓰리즘과의 경계는 모호한 것이기도 하다. 일찍이 사이드먼은 포퓰리즘을 참여의 과정이 배제된 엘리트주의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의 사법 시스템과 대비시키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다(Seidman, 1978). 이는 결국 형벌 포퓰리즘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그것이 대중친화적이라는 점이 아니라 사법참여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명분으로 행해진 정치적 과정이 간과, 삭제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나. 엄벌주의의 정치적 과정과 변이

그렇다면 어떠한 사회적 조건들이 엄벌주의 이행의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캠펠은 미국의 각 주의 사례를 비교한 연구에서, 엄벌주의 형사정책을 지지했던 모든 보수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긴 것은 아니며, 설사 그렇다 하여도 그들의 임기 기간 동안 정책들이 모두 도입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왜 하필 어떤 지역에서는 엄벌주의가 더욱 대중의 관심사에 부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처벌에 대한 태도와 제도를 형성한 역사적, 정치적 과정에 집중할 것을 주문한다(Campbell, 2011).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형벌 포퓰리즘이 엄벌주의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개진되고 있다.

첫째, 시민사회의 역량이나 대항언론의 존부 등 공론장의 기능이다. 대항언론 매체의 출현과 대중의 반응 양식 등을 분석해온 맥로비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강력한

모럴패닉 담론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관련 집단들 사이에 정보가 제공, 공유되고 사회운동이 조직되어 갈등과 경합을 벌이면서 대중의 의견이 형성, 변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이 존재함을 지적했다(McRobbie & Thornton, 1995). 퀼터는 2012년 시드니에서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살인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나 술 판매 면허에 대한 단속 등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정치인들과 정책 담당자들의 목소리에 저항하여 새로운 음주 문화 구축을 위한 캠페인을 확산시켰던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형벌 포퓰리즘 논의가 정책 입안 과정에서 대중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한 관점이라 비판하면서 대중의 의사를 단일한 목소리로 간주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이들의 목소리가 형사정책의 도입이나 처벌의 지형을 바꿔 놓는 데에 유용한 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Quilter, 2014). 형벌 포퓰리즘의 반민주성에 대한 비판과 달리 정치인들로부터 추동된 엄벌주의 담론이 오히려 대중 일반을 대변한다고 나선 외부의 행위자들, 특히 인권 및 반성폭력운동 단체의 힘에 이끌려 가게 된 뉴질랜드의 사례 역시 범죄 이슈가 민주적 과정 그 자체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경험으로 평가되기도 한다(Christie, 1993; Pratt & Clark, 2005). 디주르는 이러한 관점에서 엄벌주의가 아닌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대안 마련을 고민하는 감수성을 '두터운 포퓰리즘'이라 명명하면서 이러한 방식의 형벌 포퓰리즘 역시 가능하다고 평가한다(Dzur, 2012).

둘째, 최근의 형벌 포퓰리즘 연구들에서 엄벌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 정치구조이다(Zimring et al., 2001; Torny, 2007). 짐링은 1994년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그와 같이 가혹한 삼진 아웃법이 투표의 결과로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구체적 정책에 대하여 직접 선거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정치제도를 취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회에 비하여 더욱 가혹한 형사정책이 등장함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관료에 의한 통제와 '국민의 의지' 사이에서 형량 선고의 수준이 결정되기에 형사정책에 대한 직접 선거를 실시하는 곳들에 비하여 덜 가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Zimring et al., 2001).

선거제도 이외에 정당정치의 유형 역시 주요한 변수가 된다. 토니는 정당 구조의 성격과 1996년과 2004년 사이 유럽 국가들의 구금율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여 합의

제 정치의 성격이 강한 북유럽과 서유럽에서는 범죄 통제가 정당 간에 당파적인 이슈로 다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구금율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설명하였다(Torny, 2007). 이러한 주장은 특히 왜 합의 민주주의 전통이 있는 국가에서 보다 관대한 처벌이 실행되는지, 왜 다른 국가들은 그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비교 연구들을 통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경쟁과 갈등에 기반해 있는 다수제 민주주의에서는 시스템의 정당성과 안정성이 취약하고 반대파를 위한 주된 프로젝트가 사회적, 정치적 위기를 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는 현재의 지배 정당을 권력으로부터 제거해야할 필요성을 호소하는데 있어 ‘위기’ 담론, 대표적으로 안전과 처벌 강화 담론이 손쉽게 확대 된다는 것이다(Caplow & Simon, 2000; Torny, 2004). 또한 이러한 양당제 사회에서는 정당에 대한 지지가 갖는 불안정성으로 인해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미디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해당 사회의 범죄 두려움과 처벌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Pratt, 2007). 이에 반해 정치적 구조가 비교적 큰 변동 없이 지속되어 온 유럽의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정당이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경쟁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문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 결과 형사정책 역시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Cavadino & Dignan, 2007; Green, 2008; Lacey, 2008).

라피세팔라는 정치제도에 있어 정책의 안정성 이외에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에 주목한다. 정당의 수가 많고, 비례대표에 의한 선출이 이뤄지며 합의에 기반한 협상이 용이한 정치 제도는 이익집단들이 의사결정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이것이 특정 집단에 의한 엄벌주의적 형사정책의 도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Lappi-Seppala, 2007).

셋째, 해당 사회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정도나 그 운용의 역사적 경험이다. 사법위원회나 양형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기관들의 역할과 이들에 대한 대중 일반의 신뢰 수준은 엄벌주의 담론이 구체적 정책이나 실천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다뤄진다(Lacey, 2008; Pratt, 2007; Dzur, 2010). 예를 들어 중앙집권화된 관료제 조직을 갖고 있고 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은 독일에서는 대중들이 처벌 강화를 위해 정책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엄벌주의적 정책들이 쉽게 도입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Lacey, 2008; Petrunkin & Deutschmann, 2008). 같은 이유에서 북유럽 국가들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높은 신뢰 역시 엄벌주의 전환을 제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Pratt & Eriksson, 2013; Pratt, 2007). 벨기에(Snacken, 2007), 캐나다(Webster & Doob, 2007), 프랑스(Levy, 2007) 등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사례 연구 역시 정책 입안이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보다는 대중들의 태도나 의견에 상대적으로 많은 무게가 쏠리는 영미권의 형벌 포퓰리즘 현상은 예외에 가깝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료 및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가 엄벌주의를 제어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그 역의 관계 역시 지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오히려 높은 사법불신이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데(Lacey, 2008; Nelken, 2009), 넬켄은 '탄젠토폴리'라는 사법개혁 과정에서 높은 대중적 불신에 직면한 이탈리아의 사법부는 법 해석과 집행의 경직성으로 대응했고, 이것이 엄벌주의 효과를 제어하는데 의도치 않게 기여했음을 주장한다(Nelken, 2009).

제도 정치와 형사사법체계의 특성이 가져온 효과에 대한 이들 논의들은 합의 민주주의의 전통이 약한, 그리고 높은 사법불신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 엄벌주의 정책들이 쉽사리 입법화 될 수 있었던 과정을 설명하는데에도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또한 이탈리아의 사례는 높은 불신에 직면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방식이 엄벌주의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흔히 억압적 레짐하에서는 엄벌주의 범죄 통제 전략들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Downes, 2001; LaFree, 1998), 러시아나 남아프리카의 사례와 같이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이러한 전략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Deflem & Swygart, 2001; South & Weiss, 1998).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의 경험이 사법불신, 형사사법기관들의 엄벌주의에 대한 대응 방식, 나아가 구체적인 양형과 행형 등 법 집행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개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엄벌주의 효과로서 신자유주의 형벌국가

1. 신자유주의와 형벌국가의 지구화

갤런드는 모럴패닉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하필 그 시기, 그러한 유형의 범죄자가 ‘사회악’으로 명명되었는지를 분석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1980년대 이후 영미 사회에서 하필 복지 수혜자, 싱글맘, 불법 이민자 등이 엄벌주의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은 이들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새로운 ‘위험’과 갈등의 축으로 과잉 결정된 자들이기 때문이라 주장한다(Garland, 2002). 이와 같이 형벌정책의 강화가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쇠퇴에 따른 결과였음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논자가 바캉이다. 그는 오늘날 미국사회의 엄벌주의를 추동한 형벌 포퓰리즘의 핵심적인 행위자로 레이건 정부의 보수적 싱크탱크, 이를 지지하는 미디어, 법무부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 기구 3자를 지목한다. 특히 사회보장의 축소와 민영화를 기조로 한 싱크탱크인 맨해튼 연구소가 하층민의 도덕적 타락과 도시의 폭력 현상을 결합하는 담론들을 생산하고 뉴욕시의 무관용 정책을 대중화시킨 바, 결국 위험한 존재들로 타겟팅 된 것은 불안정한 노동자 계층이었다는 점에서 시장 규제완화와 복지예산 축소, 형벌 확장간에 직접적 연계가 있음을 주장한다(Wacquant, 2009). 또한 엄벌주의는 언더클래스에 대한 대량 구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과 게으름의 상징이 되는 이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워크페어의 정신을 설파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음을 비판한다(Wacquant, 2009; Wacquant, 1995). ‘위험한 자’들을 공간적으로 격리키시고 ‘무용한 자’들을 사회적으로 추방하기 위해 등장한 배제의 기술들이 결국은 언더클래스[4]로 향해 있다는 이러한 주장은 복지 예산의 감소와 구금율 증가간의 관계, 엄벌주의 정책의 효과로서 계급 편향적 처벌 강화를 실증하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도 지지되고 있다(Bratton, 1996; Pratt, 2002;

---

4) 이러한 연구들은 범죄통제를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위해 움직이는 활동으로 개념화하는 비판범죄학의 전통에 서 있다. 하지만 바우만은 오늘날의 감옥은 직접적으로 자본축적과 얽히지 않으며, 감옥을 통한 노동력의 재생산과 규율 역시 더 이상 요구되지 않게 되는 바, 언더클래스는 그 경제적 관점을 상실하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서는 쓸모 없는 존재들, 전적으로 무용한 것이 되었다는 점에서 근대사회의 통제방식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Bauman, 2000).

Lappi-Seppala, 2011)[5].

하지만 처벌의 효과를 이와 같이 국가-범죄자의 2자 관계 안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실재하는 범죄 피해를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6]. 더구나 바캉의 지적과 같이 계급, 인종, 젠더의 사회적 균열에 따른 처벌의 불평등이 확대, 지속된다면 대중 일반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체계 내부 행위자들 역시 이에 대하여 저항할 수도 있다. 넬켄은 사회적 기대나 정치적 요인들에 직면하여 형사사법기관이 이에 얼마나 부응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률이라는 제약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것은 한편으로는 제약인 동시에 정치, 경제적 압력들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엄벌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입법 과정에 비하여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행형이 실천되는 방식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다(Nelken, 2009). 이러한 지적 역시 엄벌주의 입법이 실제 판결과 형 집행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 과정에서 엄벌의 대상은 어떻게 선별되고 있는지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엄벌주의 지구화에 대한 비판과 형벌레짐

그런데 바캉은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형벌국가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미국발 무관용 처벌 정책의 지구화(penal globalization), 즉, 국가간에 형사정책의 유사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Wacquant, 2009).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강력한 형벌국가를 추동한다는 이와 같은 설명은 영미 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엄벌주의의 내재적 특성인 것처럼 간주하는 것은 ‘거친 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

5) 페미니스트 범죄학자들은 신자유주의와 그에 따른 엄벌주의의 효과를 계급 특정적인 것으로만 설명하는 이러한 논의들의 남성중심성을 비판한다(Gelthrope, 2010; Haney, 2000; Chesney-Lind & Pollock, 1995). 대표적으로 치즈니린트와 폴록은 1980년대 ‘마약과의 전쟁’이 곧 여성에 대한 전쟁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경미한 마약 소지 및 운반 행위에 가담한 가난한 여성들 혹은 마약에 중독된 빈곤한 성매매 여성들을 타겟팅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들은 남성들에 비해 더욱 가혹한 처벌이 부과되었음을 지적한다(Chesney-Lind & Pollock, 1995).

6) 이러한 이론적 한계는 맑스주의 범죄학이 좌파현실주의(Left-realism)의 이론적 사조로 분화, 발전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바 있다. 때문에 신자유주의 형벌국가의 작동방식이 범죄 피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역시 지적되고 있다(Lea, 2016).

도 한다(Lacey, 2008).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연구가 카바디노와 디그넌의『형벌 시스템』이다. 그들은 각 사회의 정치, 경제적 차이가 이러한 변화의 구조적인 완충제로써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금율을 종속변수로 해당 사회의 상호보완적[7] 제도들의 조합을 형사정책의 체계에 적용하여 형벌 레짐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Cavadino & Dignan, 2007).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영국, 미국 등 '신자유주의' 국가들에서는 바캉이나 갤런드의 주장과 같이 복지가 잔여적인 방식으로 최소화되고 그에 따라 복지수혜자에 대한 낙인이 강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정당화 하기 위해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엄벌주의가 천명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핀란드, 스웨덴 등 '사민주의적 조합주의' 국가들은 권리에 기반한 이데올로기가 강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사회권을 인정하는데 관대하다.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일상적으로 관리되거나 이들을 감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사회화가 처벌을 통한 낙인보다 더욱 강조되어 구금율은 낮게 나타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국가들은 가족이나 지역 등을 통한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전통이 있고 이러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 정책의 중요한 목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구금율의 수준이나 증가폭 역시 신자유주의 국가들 만큼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예외적인 국가로서 '오리엔탈 조합주의'로 명명된다. 제도적 차원에서 사회적 연대가 도모되고 있는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형벌 레짐의 국가들과는 달리, 국가의 복지를 위한 사회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예를 들어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일본 사회의 위계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사회의 조직 원리가 범죄자 역시 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감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설명된다(Cavadino & Dignan, 2007). 정치, 경제적 요인들과 처벌 수준의 관계에 대한 여러 경험 연구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국가간 차이는 지지되고 있는 바(Lacey, 2008; Lappi-Seppala, 2011; Downes, 2001), 때문에 다우니즈는 복지와 처벌의 세계는 더욱 양극화 되고 있으며 국가간에 형사정책은 바캉의 주장처럼 동형화 되는 것이 아

7) 상호보완성, 상보성은 한 사회의 특정한 제도 영역에서 가동되는 조율 방식은 다른 제도적 영역에서도 이를 보완하는 관행을 발전시키는 경향을 지칭하는 개념이다(Hall & Soskie, 2001).

니라 그 차이가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Downes, 2001).

하지만 형벌레짐 이론은 형벌 정책과 복지 정책간의 관계에 있어 유사성 혹은 친화성을 넘어 구체적인 상보성까지 적절히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Gelsthrope, 2010; Nelken, 2009). 예컨대 넬켄은 미시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용서와 연대, 형제애 등 카톨릭의 유산과 좌파 중심의 이데올로기 두 가지가 이탈리아의 온정적 처벌 태도의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정치, 경제적 제도와 직접적인 상보성 혹은 콜라보레이션의 효과는 아니라 비판한다(Nelken, 2009). 또한 형벌레짐론을 지지하는 실증 연구들이 주로 국가간 구금율을 비교하고 있는 방법론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구금율의 차이는 해당 정부의 처벌에 대한 의지 혹은 범죄자에 대한 '관대함'의 산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행형 단계의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국가의 전략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8].

3. 엄벌주의 비교연구와 국가간 변이

그 매커니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처벌 수준과 복지 국가 유형 사이의 유사성 혹은 친화성은 많은 국가비교 연구들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낮고 복지정책들이 성장해 온 사회에서는 탈물질주의 가치 지향, 그리고 범죄자에 대하여도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보다 관용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Torny, 2004; Lacey, 2008; Pratt, 2008). 이와 같이 정치구조나 시장경제 혹은 복지제도의 특징으로 환원할 수 없는, 하지만 그러한 제도에 이미 배태된 문화적 가치가 엄벌주의의 국가간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연구들 역시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영미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서유럽과 일본의 구금율은 이들 보수주의 국가에 존재하는, 범죄자를 구제할 수 있고 측은히 여기는 가치의 결과로 설명된다(Maruna & King, 2009; Melossi, 2001). 마루나와 킹은 서유럽 국가들이 영미 국가들보다 성범죄의 발생율은 더 높으면서도 엄벌주의로 쉽게 전환되지는 않은 이

8) UN 고문관으로서 국가별 구금율을 정기보고 해 온 밤슬리는 각 국가들이 10만명당 구금 인구를 100명이 넘지 않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사법체계가 움직이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Walmsley, 2003).

유는 범죄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Maruna & King, 2009). 마찬가지로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신뢰와 포용의 수준이 낮은 영미권 국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하여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강한 형벌적 응보의 은유들이 등장하는 반면, 카톨릭 국가들은 치료를 통한 개입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연성의 권위주의적 부권주의'(Melossi, 2001:412)가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설명한다(McAlinden, 2012; Jenkins, 1999). 영미의 국가들에 비하여 유럽 국가들의 보안처분이 범죄자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라는 측면 보다는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Feeley & Simon, 1992; Fitch et al, 2007), 사면 대상자가 전체 구금 대상자의 1/3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프랑스의 특성(Levy, 2007) 역시 이와 같은 문화의 효과로 설명되고 있다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태도 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화 역시 엄벌주의의 국가간 변이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미권의 국가들이나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에서는 프랑스나 독일의 서부지역에 비하여 아동 성폭력이나 아동 포르노, 청소년과의 성적 교제 등에 대하여 처벌을 지지하는 태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이들 국가들에는 아동 및 청소년기에 대한 도덕적 규율이 강한 프로테스탄트 문화가 있기 때문이며, 반면 후자의 국가들은 아동과 성인간의 성관계를 바라보는데 있어 자유의 관점이 더욱 압도적인 결과라는 것이다(Jackson & Scott, 1996; McAlinden, 2012; Bagley & King, 1990).

이와 같이 엄벌주의의 효과는 시장경제나 복지제도와의 상보성 뿐만 아니라 그 근저에 작동하고 있는 사회적 신뢰나 포용의 수준, 법과 범죄에 대한 태도 등 문화적 요인에 의해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주장되고 있는 바, 이는 엄벌주의를 신자유주의 형벌국가와 이에 대한 동형화의 관점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인 접근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Ⅳ. 결론

오늘날의 엄벌주의 현상은 그것의 역사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논의들과 같이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산물인 것만은 아니며, 신자유주의와의 친화성 역시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엄벌주의의 제도화 과정과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들을 통해, 그와 같은 현상은 해당 사회의 특수성에 따라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불가역적인 현상만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러한 연구들은 형사사법체계 및 범죄에 대한 태도,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 수준, 제도 정치의 구조와 대항 언론 및 시민사회의 역량, 복지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등이 엄벌주의를 강화 혹은 제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한국사회에서도 엄벌주의의 등장 조건과 효과에 대한 분석적 연구들이 개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엄벌주의 효과는 처벌의 계급적 차별성과 그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형벌국가론(Wacquant, 2009; Bauman, 1998; Garland, 2002)을 통해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갈런드의 지적과 같이 무엇이 ‘사회악’으로 명명되고 있는지는 해당 사회가 고수하고자 하는 지배질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하필 아동 보호와 성폭력을 중심으로 엄벌주의가 대두된 이유와 그 의미가 설명될 필요가 있다. 엄벌주의와 함께 순결한 아동기를 보호하겠다는 가부장적 섹슈얼리티 규범, 양육의 1차적 의무를 가족체계, 특히 모성에 부과하는 젠더 규범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 점(권인숙·이화연, 2011; 추지현, 2014)을 고려할 때, 그 효과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실증적인 연구들을 토대로 비판의 쟁점이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오늘날 엄벌주의의 특징이자 핵심적 구성 요소로 평가되고 있는 피해와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엄벌주의의 효과가 설명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성폭력 엄벌주의는 피해자 보호라는 외양을 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에 대한 이해 확장을 수반하지 못한 채 왜곡된 전형만이 강조되었고, 이것은 오히려 그 전형에 부합하지 못하는 피해에 대한 의심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적극적 권리 확장을 제약하는

반동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장다혜, 2012; 추지현, 2014). 엄벌주의로 귀결되지 않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공론화와 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으로서의 형벌 포퓰리즘, ‘두터운 포퓰리즘’(Dzur, 2012)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요구되는 피해의 경계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 기준은 합당하고 평등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과 숙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형사사법체계의 특성이 엄벌주의를 강화 혹은 제어하는데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이다. 한국은 OECD 회원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구금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정당정치의 특성, 사회적 포용의 수준, 복지국가와의 상보성 등에 집중하는 기존의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권위주의 시기 형사사법 파행의 역사적 경험은 보호감호와 같은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재도입을 지연 시키며 구금율의 급격한 증가를 제어하는데 기여한 반면, 이를 우회하여 강도 높은 자유제한적 보안처분들이 형벌화 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는 주장과 같이(추지현, 2017), 역사적 유제가 민주화 이후 처벌 제도의 변화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이 구금율로 포착할 수 없는 다양한 엄벌주의 실천 방식에 있어서는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 냈는지에 대하여 보다 분석적인 연구들이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인숙·이화연,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 「아시아여성연구」, 50(2), pp.85-118 (2011).

김광수, “형사입법의 엄벌주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5).

김일수, 『전환기의 형사정책: 패러독스의 미학』, 세창(2010).

박형민·이민아, “강력사건 및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의 실태와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09).

양정혜, “뉴스 미디어가 재현하는 범죄현실 :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프레이밍”, 『언론과학연구』, 10(2), pp.343-379(2010).

이경재, “1990년대 이후 형사정책 관련 법률의 특징과 이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 30, pp.189-217(2010).

이덕인, “강벌주의 형사제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범죄 처벌과 재범방지정책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3(3), pp.261-284(2011).

이호중, “사회안전과 형사실체법의 변화, 과제와 전망: 신자유주의 안전담론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5(43), pp.269-309(2013).

장다혜, “성폭력 범죄를 둘러싼 현대사회의 신화들”, 『여/성이론』, 27, pp.222-235 (2012).

정재준, “정부의 성향에 따른 형사사법의 통계적 수치 비교”, 『고려법학』, 60, pp.317-354(2011).

조연민, “자유주의 세계화와 형벌국가의 등장－로익 바캉의 『가난을 엄벌하다』에 대한 비판범죄학적 검토를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14권, pp.445-505(2014).

최정학, “엄벌주의와 범죄예방_아동 성범죄의 사례”, 『민주법학』, 54, pp.211-242 (2014).

추지현, “‘성폭력을 엄벌하다’: 2000년대 성폭력 정책 담론의 구조와 효과”,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회, 30(3), pp.45-84(2014).

______, “사법민주화와 엄벌주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한인섭, “유기징역형의 상한, 근본적인 재조정 필요하다”, 「형법개정안과 인권: 법

무부 형법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최소 대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엮음, 경인문화사(2010).

Bagley, C. and King, K., *Child Sexual Abuse*, London: Tavistock Routledge(1990).

Brake, M. and Hale, C., *Public Order and Private Lives*, London: Routledge (1992).

Bauman, Z., "Social Uses of Law and Order", *Criminology and Social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2000).

Beck, U., *Risk Society*, Thousand Oaks, Ca:Sage(1992).

Beckett, K. and Sasson, T., *The Politics of Injustice,* Sage Publications(2000).

Black, D., *The Behavior of Law,* Academic Press(1976).

Bottoms, A. "The philosophy and politics of punishment and sentencing", *The politics of sentencing reform*, pp. 17-50. Oxford: Clarendon Press(1995).

Bratton, W., "Cutting Crime and Restoring Order: What America can learn from New York's Finest", Heritage Lecture, 573, Heritage Foundation: Washington(1996).

Campbell, M. C., "Ornery alligators and soap on a rope: Texas prosecutors and punishment reform in the Lone Star State", *Theoretical Criminology*, 16(3) pp.289-311(2011).

Caplow, T. and Simon, J., "Understanding Prison Policy and Population Trends", *Prison: Crime and justice,*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99).

Cavadino, M. and Dignan, J., *The Penal System*, LA:Sage(2007).

Chesney-Lind, M.. and Pollock, J., "Women's Prisons: Equality with a Vengeance", *Women, Law, and Social Control.* Boston, MA: Allyn and Bacon(1995).

Cohen, S., *Folk Devil and Moral Panics*, New York: Routledge(1972).

________, *Folk Devil and Moral Panics(3rd edn),* London; Routledge(2004).

Deflem, M. and Swygart, A. J., "Comparative Criminal Justice", *Handbook of criminal justice administration*, New York: Marcel Dekker(2001).

Downes, D., “The macho penal economy: Mass incarceration in the U.S-A European Perspective”, *Mass Imprisonment,* London: Sage, pp.51-69(2001).

Dzur, W., “The myth of penal populism: Democracy, citizen participation, and american hyper incarceration”, *Journal of Speculative Philosophy*, 24(4), pp.354-379(2010).

________, “Participatory Democracy and Criminal Justice”, *Criminal law and Philosophy*, 6(2), pp.115-129(2012).

Feeley, M. and Simon, J., “The new penology”, *Criminology,* 30(4), pp.449-474 (1992).

Fitch, K., Spencer, K and Hilton, Z., *Protecting Childred from Sexual abuse,* London: NSPCC(2007).

Garland, D., *The Culture of Contro*l, Chicargo, IL: University of Chicargo Press(2002).

__________, “On the Concept of Moral Panic”, *Crime, Media, Culture*, 4(9), pp.9-30(2008).

Gelsthorpe, L., “Women, crime and control”,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10(4), pp.375-386(2010).

Green, D. A, *When Children Kill Children,* Oxford: Oxford University(2008).

Haney, L., “Feminist State Theory: Applications to jurisprudence, Criminology, and the Welfare Stat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pp.641-666 (2000).

Jackson. S. and Scott, S., “Risk Anxiety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Childhood”, *Risk and Sociocultur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1999).

Jenkins, P., *Synthetic panics: The symbolic politics of designer drug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1999).

Lacey, N.,, *The prisoners' dilemma,* Cambridge University Press(2008).

LaFree, G. and Tseloni, A., “Democracy and Crime: A Multilevel Analysis of

Homicide Trends in Forty-Four Countries, 1950-2000",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05(1), pp.25-49 (2006).

Lappi-Seppala, T., "Explaining imprisonment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8(4), pp.303-328(2011).

________________, "Penal Policy in Scandinavia", *Crime and Justice,* 36, pp.217-296(2007).

Lea, J..“ Left Realism: A Radical Criminology for the Current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for Crime, Justice and Social Democracy,* 5(3), pp.53-65(2016).

Levy, R., "Pardons and Amnesties as Policy Instruments in Contemporary France", *Crime, Punishment and Politics in Comparative Perspective,* IL: Chicago University Press, pp.551-590(2007).

Young, I. M., "Punishment, Treatment, Empowerment: Three Approaches to Policy for Pregnant Drug Addicts", *Expecting Trouble*,. Boulder, CO: Westview Press(1995).

Maruna, A. and King, S., "Public Opinion and Community Penalties", *Alternatives to Prison,* pp.83-112(2004).

McAlinden, A., "The governance of sexual offending across Europe: Penal policies, political economie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isk", *Punishment & Society,* 14(2), pp.166-192(2012).

McRobbie, A. and Thornton, S.L., "Rethinking ‘moral panic’ for multi-mediated social world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6(4), pp.559-574(1995).

Melossi, D., "The Crime of Modernity: Punishment, Crime and Migration in Italy (1863-1997)",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naheim, CA(2001).

Nelken, D., "Comparative Criminal Justice:Beyond Ethnocentrism and Relativism",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6(4), pp.291-311(2009).

Pratt, J. and Clark, M., “Penal Populism in New zealand”, *Punishment and Society*, 7, pp.303-322(2005).

Pratt, J., “Civilization and Punishment”,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33(2), pp.183-201(2000).

_______, *Penal Populism*, London: Routledge(2007).

Pratt, J. and Eriksson, A., *Contrasts in Punishment: An Explanation of Anglophone Excess and Nordic Exceptionalism*, London: Routledge(2013).

Quilter, J., “Populism and criminal justice policy: An Australian case study of non-punitive responses to alcohol-related violence”,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48(1), pp.24-52(2014).

Robert, J., Stalans, L., Indermaur, D. & Hough, M., *Penal populism & public opinion,* Oxford University Press(2003).

Sack, F., “Social structure and crime policy: The German case”, *Punishment & Society,* 15(4) pp.367-381(2013).

Seidman, R., The State, *Law and Development,* Routledge(1978).

Simon. J., *Governing through Crim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7).

________, “Megan’s Law: Crime and Democracy in Late Modern America”, *Law & Social Inquiry,* 25(4) pp. 1111-1150(2000).

Snacken. S., “Penal policy and practice in Belgium”, *Crime, Punishment and Politics in Comparative Perspective,* IL: Chicago University Press, pp.127-216(2007).

South, N. and Weiss, R., “Crime, punishment and the “state of prisons” in a changing world”, Comparing prison systems, Amsterdam: *Gordon and Breach Publishers*, pp.1-18(1998).

Stringer, R.,, *Knowing Victims*, Routledge: Engelska(2014).

Tonry, M.,, “Determinants of penal policy”, *Crime, Punishment and Politics in Comparative Perspectiv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rgo Press

(2007).

Ungar, S., “Moral Panic versus the Risk Society: The Implications of the Changing sites of Social Anxie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2(2), pp.271-92(2001).

Wacquant, L., “The Comparative Structure and Experience of Urban Exclusion: ‘Race’ Class and Space in Chicago and Paris”, *Poverty, Inequality and the Future of Social Policy,* New York: Rusell Sage Foundation(1995).

___________, *Punishing the Poor*, Duke Univ Press(2009).

Walmsley, R., *World prison population list(Third edition*), London: Great Britain Home Office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2002).

Webster, C. M. and Doob, A. N. “Punitive trends and stable imprisonment rates in Canada”, Crime and Justic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297-369(2007).

Zimring, F. E., “Kids, Guns, and Homicide: Policy Notes on an Age-Specific Epidemic”,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59, pp.25-37(1996).

Zimring, F. E., Gordon, H., and Sam, K., *Punishment and Democracy: Three Strikes and You’re Out in Californ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2001).

Critical Review of Punitiveness Universality : Trends and Issues in Literatures

Choo, Ji-hyun*

While previous discourses on punitiveness stressed its universality,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going beyond universality.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starts out from a question to understand certain factors that could enhance or control the effectiveness of such punitiveness to give a concrete shape to the intervention and criticism. This paper reviews the literatures on penal populism and penal state in neoliberalism era which has been widely used as two dominant theories of punitiveness in the context of history and social universality. Especially, the paper presents some important issues on this body of research which demonstrates exquisite empiricism and criticism.

Analysis of these literatures reveal that the nature of political institution, capacity of civil society and media, level of public trust towards criminal justice system and social inclusion are the factors causing variations in punitiveness. Furthermore, the literatures suggest that “thick populism” can be achieved, as these factors arises from participatory politics that are not relevant to the punitiveness.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further empirical research on the topics considering historical experience in Korea and its distinct characteristics will need to be undertaken.

❖ Keyword: punitiveness, penal populism, moral panic, neoliberalism, penal state

투고일 : 6월 1일 / 심사일 : 6월 16일 / 게재확정일: 6월 16일

* Researcher,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